

VI.

그 밖의 법제 관련 업무



가. 개요

법제처장은 「행정기본법」 제38조제3항에 따른 법령안의 입법계획을 총괄·조정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4조). 정부입법계획은 국정과제 및 정부 주요정책 등의 이행을 위해 매년 각 부처에서 추진하려는 입법사항에 대하여 정부 전체차원에서 입법추진의 우선순위와 시기 및 주요 내용을 조정한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정부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입법 활동이 특정시기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충분한 연구와 법안심의를 이루어지도록 하며, 정부 정책의 입법수요를 종합·관리하여 정부입법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부처 입법계획의 수립·시행

법제처장(법제정책총괄과)은 매년 각 중앙행정기관이 해당 연도에 추진할 법령안 입법 계획의 작성 방법, 제출 시기와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이 포함된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여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각 부처에서는 지침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추진할 법령안에 대한 부처 입법계획을 수립하여 전년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제출해야 한다. 부처에 소속된 기관의 장은 그 소속 부처의 장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및 제8조제1항).⁶⁸⁾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입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계 기관과의 충분한 협의기간을 두도록 하고 법제처 및 국회의 충분한 법률안 심의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⁶⁹⁾ 또한 법률안의 국회제출은 연중 고루 안배되도록 유의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⁷⁰⁾

68) 예를 들어, 국가유산청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이므로 소관 법령에 대한 입법계획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거쳐 제출해야 한다.

69) 입법절차 진행에 필요한 소요기간을 고려할 때, 적어도 국회제출일 120일 전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령안 추진일정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70) 해당 연도에 국회통과가 필요한 법률안은 10월 중순까지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세법 등 예산부수법안은 9. 2.까지 국회제출 필요).

부처 입법계획의 내용

내 용	세 부 사 항
○ 입법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의 제도운영실태 - 입법추진배경 - 입법으로 얻어지는 효과 - 관련단체 등의 입법의견
○ 내용요지	- 최대한 자세하고 명확하게 제시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안시기 - 관계기관과의 협의계획 - 입법예고 및 공청회 계획 - 법제처 제출시기 - 국회 제출시기 - 시행 예정일
○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다. 정부입법계획의 수립 및 국무회의 보고 등

법제처장은 부처입법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해당 연도에 정부에서 추진할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며, 정부입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2항).

확정된 정부입법계획⁷¹⁾은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하며(「법제업무 운영규정」 제8조제3항),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⁷²⁾

71)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의 입법계획담당자는 확정된 입법계획을 정부입법시스템에 등록하여 소관부처 입안담당자가 정부입법시스템을 통해 해당 입법계획에 대한 법률안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72) 「국회법」 제5조의3(법률안제출계획의 통지) 정부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에 제출할 법률안에 관한 계획을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분기별로 주요사항을 국회에 통지해야 한다.

라. 정부입법계획의 추진 및 수정 등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입법을 추진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법제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1항 및 제2항).⁷³⁾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 사유사항

-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추진을 철회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토하여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⁷⁴⁾ 이 경우 법제처장은 정부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정 요청을 받은 정부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일정, 중복·상충되는 사항 등을 조정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제3항).

02 훈령·예규 등의 심사

대통령훈령안 및 국무총리훈령안의 사전심사와 각 중앙행정기관의 훈령·예규 등의 입안 및 사후심사의 절차에 관해서는 「행정규칙 입안·심사 기준」을 참조한다.

73) 매년 초 정부입법계획 수립 후, 각 부처의 빈번한 수정으로 인해 정부입법계획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입법계획 수립 단계부터 각 부처에서는 정책검토가 충실히 성숙된 법령안을 중심으로 정부입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74) 또한,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의 입법계획담당자는 변경된 입법계획을 정부입법시스템에 반영해야 한다.

03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가. 목적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은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을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마련하는 것을 말하며,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함으로써 법률에 담긴 정부정책의 적기시행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최근에는 국회로부터 입법의도의 실현과 국회 입법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나.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 법률의 확정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국회에서 법률안이 이송되면 소관 법제(심의)관실 및 소관 부처에 해당 법률안을 송부하여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인지 여부를 협의(붙임 제19호서식 참조)한다.

하위법령 제때마련 대상 법률은 일정한 요건·기준 또는 절차 등을 하위법령(대통령령)에 위임한 경우 그 위임된 내용을 정하는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시행 가능한 법률을 말한다. 단순히 관련 조문 번호가 변경된 경우 또는 이미 대통령령 등에 있는 내용에 대하여 그 근거 규정을 두는 경우 등은 하위법령 마련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법률에서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하위법령에서도 유효기간을 삭제해야 할 필요가 있거나 법률이 폐지되어 하위법령도 형식적으로 폐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하위법령 제때 마련 대상에 준하여 관리한다.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법률을 공포할 때마다 하위법령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하위법령 제때마련 대상 법률을 선정하고, 소관 부처 및 법제(심의)관실과 협의하여 확정된 하위법령 제때마련 대상 법률의 목록을 법률 공포 후 지체 없이 소관 부처(법무담당관실)와 법제국에 통보한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특별관리

- 하위법령에서 정할 내용이 국민·기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신설·변경 또는 조례나 하위법령을 제정하는 경우 등에는 국민 또는 행정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입법절차를 앞당겨 조기에 공포되어야 정부 주요정책의 원활한 시행이 가능하다.
- 이러한 하위법령에 대해서는 우선 법률안 국회 의결 후 소관부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입법 진행상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필요시 법령입안지원, 입법예고 단축 협의, 사전심사 등 지원을 실시하는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 특별관리대상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기준일은 소관부처 및 법제국과 협의하여 입안소요기간 및 최소입법필요기간(3개월)을 고려하여 법률의 시행일보다 일정기간 일찍 공포될 수 있도록 별도로 선정한다.

다. 하위법령 제때 마련 독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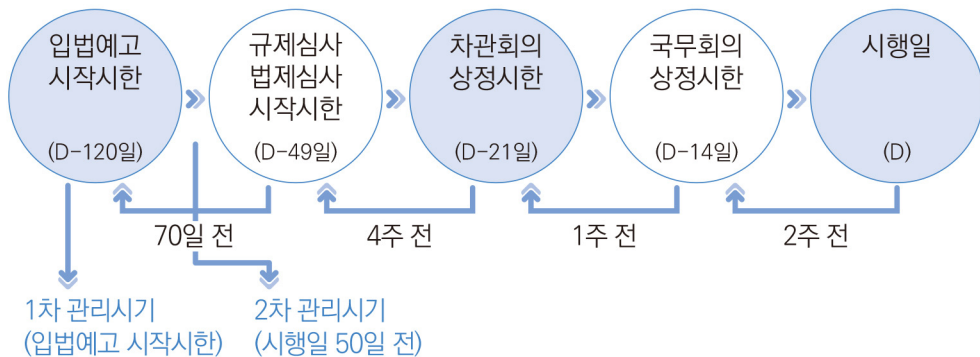
소관 부처에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법률의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부처협의,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등의 입법절차를 마치고, 그 법률의 시행일 45일 전까지 법제처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3항). 이를 위하여 법제정책총괄과에서는 수시로 각 부처 소관 하위법령 마련대상 법률의 목록을 송부하며, 연도 중 공포되는 법률에 대해서는 공포와 동시에 하위법령 마련 대상 법률 목록을 추가로 송부하고, 하위법령에 대하여 조속히 입법절차를 진행하도록 독려한다.

법제처장은 법령안 심사 시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요를 미리 제출받아 일괄심사(「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11조제4항)를 해야 하며,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하위법령의 마련 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제4항). 그 외에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회의, 법무담당관회의 등을 통하여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을 수시로 독려하도록 한다.

과거에 비해 소관부처의 하위법령 제때 마련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대부분의 하위법령이 제때 마련되고 있지만, 소관부처의 입법절차 지연으로 하위법령이 시행일을 넘겨 마련되는 사례가 간혹 발생하고 있는바,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마련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2013년 6월부터는 시행일부터 최소입법소요기간(약 90일)⁷⁵⁾을 고려하여 2차례에 걸쳐 소관부처의 입법추진상황을 집중 점검·관리하고 있다. 최근에는 시행일 전 120일이 될 때까지 아직 입법예고 되지 않은 법령을 신속하게 입법예고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1차 관리), 시행일 전 50일이 될 때까지 아직 법제처에 심사의뢰되지 않은 법령은 소관부처에 규제심사 진행상황, 부처이견 유무 등을 확인하여 입법추진이 늦어지지 않도록 독려한다(2차 관리).

제때 마련 대상 하위법령 입법추진상황 점검·관리체계 개요도



또한, 2014년 6월부터는 입법소요 최소기간을 고려하여,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상황의 점검을 실시하여, 입법절차 지연 시 경보·관리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신호등 관리체계를 정부입법시스템으로 구현해 운영하고 있다.

하위법령 신호등 관리체계 운영

- 녹색등(●) : 정상추진 중인 경우
- 황색등(●) : 시행일 90일전까지 입법예고 미실시 또는 시행일 40일 전까지 법제처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
- 적색등(●) : 시행일을 초과하여 제때 마련되지 않은 경우

75) 법령을 제·개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말하며, 입법예고 40일,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1개월, 차관·국무회의 2주, 대통령 재가 및 관보게재 1주를 포함한다.

라. 국무회의 상정 및 재가 소요시간 단축

제때 마련 대상 하위법령인 경우에는 차관회의 상정 기한을 준수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공포 시한이 촉박한 경우에는 국무조정실 및 대통령비서실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대통령 재가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함으로써 법률 시행일까지 하위법령이 공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04 의원발의 법률안 검토 및 법제조정

가. 개요

정부의 입법과정에서는 다수 부처와 관련된 정책을 조정하거나 정부 전체 차원의 정책 방향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부처협의, 규제심사 또는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의원발의 법률안은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어 집행상 문제가 발생하거나, 집행과정에서 준비 부족으로 인한 혼선이나 정부부처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각 부처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정책적 견해를 결정하고 그 견해를 정부 차원에서 다시 조율하여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정부부처 간 및 정부·국회 간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법률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법제처에서는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신속히 파악한 후 법리적 쟁점 및 부처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에 전달하여 해당 법률안의 내용을 검토 및 상호 협의하도록 하고, 부처 간 자율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할 수 있다. 또한, 법제처는 국회 심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상임위원회 상정 및 의결된 사실을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에 통보함으로써 소관 부처 및 관계부처가 국회 심의과정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나. 주요 검토 및 법제조정 사항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모든 법률안에 대하여 ① 헌법 위반, 법령 상호 간 체계 문제, ② 규제의 신설·강화 여부, ③ 조세의 감면이나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④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및 인원의 소요 여부, ⑤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여부 등을 검토한다.

1) 법리적 쟁점

가) 헌법 사항 위반 여부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할 때에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의 원리, 법치국가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복지국가의 원리, 문화국가의 원리 및 평화국가의 원리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와 기본권과 관련된 헌법상의 주요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기본권 제한의 한계),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소급입법금지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중요사항 유보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및 조세법률주의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 간 헌법상 권력분립의 정신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내용은 없는지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나) 법령 상호 간 체계 문제

법률안과 다른 법률 상호 간에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 모순·저촉되지 않는지를 검토하고, 하나의 법률안의 조문 상호 간에도 각각 형성하고 있는 법적 제도의 측면에서 조화와 균형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법률적 지위를 갖는 다른 법률과 모순·저촉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법률을 새로운 법률의 내용과 모순·저촉 되지 않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명백하게 모순·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적용상 의문이 없도록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률안에서는 다른 법률과 동일한 내용이 중복적으로 규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들이 개정될 경우 상호 모순·저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2) 규제 관련 쟁점

해당 법률안에 허가·인가 등의 규제가 새로 도입되거나, 등록사항이 허가사항으로 변경되거나 기존의 허가·인가·등록 등의 요건이 강화되는 등 규제의 신설·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정책상 경기회복과 경제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의원입법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규제가 강화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규제의 신설·강화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국무조정실과 협의해야 한다.

3) 예산 관련 쟁점

가) 조세의 감면 여부

법률안에 소득세 등 조세감면으로 인하여 국가세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개발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안에서 빈번히 등장하므로 각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서 정하는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이 정책적으로 타당한지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은 물론 관계부처인 재정경제부의 의견을 반드시 듣고 협의를 해야 한다.

나) 재정지출의 증가 여부

법률안에서 정하는 정책적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서 새로운 예산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증가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정책 등 해당 법률안의 시행으로 국가 재정지출의 증가를 초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국가의 단기·중기 또는 장기적 재정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일 뿐만 아니라 법률안이 법률로써 확정된 후 구체적인 집행과정에서 재정보화가 되지 않아 실제로 집행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는 법률안에는 원칙적으로 비용 추계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통해서 재정지출의 증가가 수반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일반회계의 증가 또는 특별회계의 신설·증가를 포함하고 있거나 기금 또는 부담금의 신설·증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법률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들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는 재정정책과 회계제도, 기금 및 부담금제도를 총괄하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야 한다.

4) 정부의 조직 및 인력 관련 쟁점

가) 정부조직의 신설·폐지·변경 여부

법률안에 정부조직을 신설하거나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조직법」은 중앙행정조직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의 대강을 정한 법률로, 헌법에 설치근거가 있는 감사원 등 헌법기관을 제외하고는 중앙행정조직을 일괄하여 통합 규정하므로 중앙행정조직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을 법률로 신설하는 경우에는 「정부조직법」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마찬가지로 기존 조직의 폐지 또는 변경을 가져오는 사항도 그것이 법률사항일 때에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해야 할 것이므로 이들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에서 정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요청된다.

나) 인력의 소요 여부

개별 법률안에 인력의 소요가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주요 검토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조직이 신설되는 경우에는 인력의 증가가 수반되게 되므로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체적으로 조직 및 인력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인건비가 수반되게 되어 해당 법률안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므로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5)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및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 여부

가) 입법정책상 부처 간 이견 유무

법률안에 둘 이상의 부·처·청과 관계되는 정책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 각 부·처·청이 국회를 상대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정부의 통일된 의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률안이 발의되면 그 법률안에 다른 부처와

관련되는 정책적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다음으로 그 정책적 사항에 대하여 소관부처의 입장을 정리한 후 관계부처와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 법률안에 경쟁제한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나) 그 밖에 집행상 문제점이 있는지 여부

법률안에 실제 집행이 어려운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법률안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비현실적인 규제는 정책집행 당국에서 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준법정신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소관부처에서는 해당 법률안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부칙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다. 검토 및 법제조정 업무 절차

업무 흐름도



1) 의원발의 법률안 발의사실 통보

의원발의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실무적으로는 국회 의안과에서 해당 법률안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이를 접수한다)되면 국회의장(실무적으로는 국회 의안과)은 그 법률안을 국회의원에게 배부(인쇄 또는 전산망에 입력)하고, 본회의에 보고(폐회나 휴회 등으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법제처 정부입법지원센터의 의원입법지원시스템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http:// likms.assembly.go.kr/bill](http://likms.assembly.go.kr/bill))과 연계되어 있어 발의된 법률안은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는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확인된 발의법안에 대하여 소관부처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법률안의 내용에 지방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통보한다.

2) 의원발의 법률안 통보 및 검토

가) 법률안의 통보

법제조정법제관실은 의원발의 법률안의 내용을 확인하여 법리적 쟁점, 예산, 조직, 규제, 정책 상충 등 다른 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협의가 필요한 조문은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나)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대한 검토의견 통보

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 법률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게 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한다. 검토의견서에는 법률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관계부처가 있는 경우 관계부처와의 협의 필요 여부 등이 포함된다. 소관부처와 관계부처에 통보한 검토의견 중에서 국회의 법안심사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검토의견을 함께 보낸다.

1. 예산지출에 관한 사항: 기획예산처
2. 조세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
3. 조직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
4. 인력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처
5. 규제 관련 사항: 국무조정실
6. 다수 부처 관련 사항: 해당 법률안에 포함된 정책과 관련되는 부처

다) 법률안의 국회 심의 단계별 통보

법제조정법제관실에서 의원발의 법률안의 국회 심의과정을 모니터링하여,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거나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해당 상정 및 의결 사실을 법률안의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에 통보한다.

3) 부처 간 협의

가) 소관부처 및 관계부처 간 협의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발의사실 또는 검토의견을 법제처로부터 통보받은 소관부처에서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부처와 협의해야 하며, 법률안의 내용에 지방제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도 협의해야 한다. 관계부처는 소관부처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해당 법률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소관부처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부처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나) 소관부처의 협의 결과 통보 등

법률안의 소관부처에서 관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들은 경우 그 의견 및 협의 결과를 의원입법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하고,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관계부처의 경우에도 해당 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견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부처 간 협의를 실시한 결과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에 이견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견조정 요청은 소관부처는 물론 관계부처도 할 수 있다.

4)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 이견조정

법률안의 소관부처와 관계부처 간에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이견이 해소되지 되지 않아 소관 부처 또는 관계부처에서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를 요청하게 되면, 법제처에서는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소집하여 이견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법제처에서는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의원발의 법률안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이견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이견을 조정한 결과 정부의 통일된 의견이 도출되면 해당 법률안의 소관부처는 그 통일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관계부처도 국회에서 의견조화가 있을 때에는 그 합의된 의견대로 국회에 대응해야 한다.

5) 국무조정실 조정의뢰 등

소관부처 또는 관계부처의 요청에 의하여 정부입법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견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 법제처에서는 이를 국무조정실에 통보하여 조정을 요청해야 한다.

법제처장은 정부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고위 당정협의회에 이를 보고할 수 있고, 입법추진상황 및 정부대응 개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수 있다.

05 법제업무 평가

가. 개요

1) 평가근거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제2항 및 제3항

제28조 ② 법제처장은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감사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4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22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운영실태에 관한 분석·평가가 필요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법제업무

③ 법제처장은 제2항에 따라 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대상기관

- 49개 중앙행정기관(부 단위 20개, 처·청·위원회 단위 29개)

구 분	기 관 명
부 단위 (20개)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조정실
처·청·위원회 단위 (29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데이터처, 지식재산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우주항공청, 재외동포청, 병무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국가유산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질병관리청, 기상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해양경찰청

나. 주요 평가사항

세부 평가부문	평 가지 표
정부입법계획	▶ 일정 준수율(법제처 제출일, 국회 제출일 등 일정 준수 정도)
입법예고	▶ 입법예고기간 준수율(법정 입법예고기간 준수 정도) ▶ 국민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답변지연 여부 및 충실성
하위법령 제때 마련	▶ 제때마련 준비율(제때마련 대상 법령이 통상의 입법절차를 거쳐 제때 마련된 정도)
가점	▶ 법령정비 노력 ▶ 입법성과 및 입법품질 제고 노력